

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「**임실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**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4. 11. 12.

### **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)  
제1항의 [별표1] 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1]

#### **임실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(제2조 관련)**

(단위 : 원)

구 분	의정 활동비		월정수당	
	연 봉	월 액	연 봉	월 액
의 원	13,200,000	1,100,000	17,289,000	1,440,750

- (1)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의정비 지급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. 단, 안전행정부 지급 기준액 20%초과 시 20%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[별표 1]</b>                      임실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(제2조 관련)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의정활동비</th> <th colspan="2">월정수당</th> </tr> <tr> <th>연봉</th> <th>월액</th> <th>연봉</th> <th>월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원</td> <td>13,200,000</td> <td>1,100,000</td> <td><u>17,000,000</u></td> <td><u>1,416,666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구분	의정활동비		월정수당		연봉	월액	연봉	월액	의원	13,200,000	1,100,000	<u>17,000,000</u>	<u>1,416,666</u>	<p><b>[별표 1]</b>                      임실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(제2조 관련)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의정활동비</th> <th colspan="2">월정수당</th> </tr> <tr> <th>연봉</th> <th>월액</th> <th>연봉</th> <th>월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원</td> <td>-----</td> <td>-----</td> <td><u>17,289,000</u></td> <td><u>1,440,750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1)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의정비 지급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. 단, 안전행정부 지급 기준액 20%초과 시 20%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</p>	구분	의정활동비		월정수당		연봉	월액	연봉	월액	의원	-----	-----	<u>17,289,000</u>	<u>1,440,750</u>
구분		의정활동비		월정수당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봉	월액	연봉	월액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	13,200,000	1,100,000	<u>17,000,000</u>	<u>1,416,666</u>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의정활동비		월정수당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봉	월액	연봉	월액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	-----	-----	<u>17,289,000</u>	<u>1,440,75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참 고

## 관련(상위) 법 발췌문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제34조(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, 통·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·의회의원·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
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

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,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,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회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